

① 정책사업명	일·가정 양립 지원 확대		
② 추진배경	○ 「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」를 위한 여건 조성 - 출산·육아가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 및 '맞돌봄 문화'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·가정 양립 환경 조성 필요		
③ 사업개요	○ 육아기, 은퇴기 등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검토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및 임금감소 지원 확충을 통한 「10 to 4」 더불어 돌봄 지원 - 질병, 사고, 노령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근로자 '가족돌봄휴직제도(현행 무급 30~90일) 활성화 방안 마련		
④ 사업부서	여성고용정책과	⑤ 담당자	임동희 과장 강나래 감사근 사무관
	고용문화개선정책과		최준하 과장 김송이 사무관
⑥ 선정기준	국정과제	⑦ 사업기간	'18년~
<b>&lt;그간 주요 추진내용&gt;</b>			
○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설 및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			
- '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시	'21.4.5.	황보국 국장 임동희 과장 김대근 사무관	
- '20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시	'20.3.16	송홍석 국장 이현옥 과장 강나래 사무관	
- 가족돌봄휴직 사용사유에 자녀양육을 추가하고 연간 10일(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)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설·시행	'20.1.1.	송홍석 국장 이현옥 과장 강나래 사무관	
○ 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선			
- 가족돌봄휴직 근속기간 완화: 근속기간 1년→6개월로 단축	'20.1.1.	송홍석 국장 이현옥 과장 강나래 사무관	
- 가족돌봄휴직 대상가족 확대: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에 조손가정 추가	'19.10.1.	김덕호 국장 김효순 과장 박미연 사무관	

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		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: 최대 1년→2년, 1일 1시간 단축 허용	'19.10.1.	송홍석 국장 이현옥 과장 강나래 사무관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: 1일 1시간 단축급여 통상임금 80%→100%로 인상	'19.10.1.	송홍석 국장 이현옥 과장 강나래 사무관